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회장 선거 안내

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, 제2대 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■ 선거개요

○ 선 출 자 :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 회장 (1명)

○ 선거일자 : 2020. 11. 12.(목) 10:00 ~ 15:00 (예정)

○ 선거방법 : 직접투표

■ 선거일정

구분	일자	비고
· 회장 선출 공고	2020. 11. 4.(수)	홈페이지
· 후보자 등록	2020. 11. 6.(금) ~ 11. 8.(일) 18시까지	방문 접수
· 입후보자 공고	2020. 11. 9.(월)	홈페이지
· 회장 선거	2020. 11. 12.(목)	직접투표
· 당선인 공고	2020. 11. 13.(금)	홈페이지

■ 제출서류

- 1. 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
- 2. 가족관계증명서
- 3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- 4.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(별지 제4호 서식)
- 5.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(별지 제5호 서식)
- 6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

■ 제출방법

· 서면 직접 접수

(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테니스협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56, 브리타니114)

* 접수는 등록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
- 후보자 자격요건 (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)
- ·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
- 후보자 결격사유

〈 회장선거관리규정 〉

- 제12조(임원의 결격 사유)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제주도장애인테니스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.
 -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도장애인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-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「형법」제314조 및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-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사람
 - 5. 국회의원
 - 6.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그 시 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 시·도지부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 시·도지부,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수 없다.

제 주 특 별 자 치 도 장 애 인 테 니 스 협 회